

2021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의 안 번호	2408
-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5월 25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장

1. 제안이유

가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(안)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예치금 4,289백만원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적립할 예정으로,
- 나.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들의 복리증진 등으로 집행하고자 '21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.

〈수입 및 지출 내역〉

(단위: 백만원)

수 입				지 출			
항목	당초(A)	변경(B)	증감(B-A)	항목	당초(A)	변경(B)	증감(B-A)
합계	35,133	40,922	5,789	계	35,133	40,922	5,789
전입금	27,821	27,821		비용자성 사업비	29,655	31,403	1,748
예치금 회수	5,144	9,433	4,289	예치금	5,478	9,519	4,041
예탁금 원금회수	2,000	3,500	1,500	예탁금	-	-	
이자수입	168	168					

○ 수입 변경 : 5,789백만원 증가

- 예치금 회수 4,289백만원 : (당초) 5,144백만원 → (변경) 9,433백만원
 - ※ 양천 기금 계획대비 차액(주민지원사업비 716백만원 등)으로 예치금 회수 수입 발생 : 845백만원
 - ※ 노원 기금 계획대비 차액(아파트 관리비 1,748백만원 등)으로 예치금 회수 수입 발생 : 1,847백만원
 - ※ 강남 기금 계획대비 차액(주민복지증진사업비 1,588백만원 등)으로 예치금 회수 수입 발생 : 1,596백만원
 - ※ 마포 기금 계획대비 차액으로 예치금 회수 수입 발생 : 1백만원
- 예탁금원금 회수 증가 : 1,500백만원
 - ※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금리(1.39%, '21. 3. 기준)가 공공예금 금리(1.71%, '21. 3. 기준)보다 낮음에 따라 회수

○ 지출 변경 : 5,789백만원 증가

- 비용자성사업비 증가 : 1,748백만원
 - ※ 2020년도 노원주민지원기금 중 아파트관리비 등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2021년도 기금 지출계획에 반영
- 예치금 증가 : 4,041백만원
 - ※ 2021년 수입 변경 및 비용자성사업비 지출 변경으로 예치금 증가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 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 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 - 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- ※ 작성자 :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팀 박포근 (☎2133-3699)